

제 15 장 전자상거래

제 15.1 조 일반규정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제 15.2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11장 내지 제13장(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해당 의무에 적용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제 15.3 조 디지털제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¹⁾을 부과할 수 없다.
 - 가.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 또는
 - 나.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²⁾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국이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그 조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제2.14조(상품무역위원회)제4항에 합치되게, 상품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한 분류 사안에 관하여 양 당사

2. 어떠한 당사국도 일부 디지털제품³⁾에 대하여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음의 경우 부여할 수 없다.

가. 다음을 근거로 하는 경우

- 1)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 제작 · 발행 · 저장 · 전송 · 계약 ·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 또는
- 2)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 · 실연자 · 제작자 · 개발자 · 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것, 또는

나. 자국 영역에서 창작 · 제작 · 발행 · 저장 · 전송 · 계약 ·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3. 어떠한 당사국도

가.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 제작 · 발행 · 계약 ·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 제작 · 발행 · 계약 ·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또는

나. 저작자 · 실연자 · 제작자 · 개발자 · 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비당사국의 인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저작자 · 실연자 · 제작자 · 개발자 · 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4. 제2항 및 제3항은 제11.12조(비합치 조치), 제12.6조(비합치 조치), 또는 제13.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지원 용자 ·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국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견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목표를 인정하여, 제2항의 “일부 디지털제품”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 제작 · 발행 · 계약 또는 발주되는 그러한 디지털제품 또는 그 저작자 · 실연자 · 제작자 · 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만을 지칭한다.

나. 제12.1조(적용범위)제6항에 정의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6. 이 조는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 수신을 위하여 콘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편성되고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련의 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을 및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5.4 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전자인증을 위한 법령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 나.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또는
- 다.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법령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 가. 정당한 정부 목적에 기여하여야 하고,
- 나. 그 목적의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제 15.5 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

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은,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사안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에 대처하여 법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 15.6 조 종이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15.7 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 가.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
- 나. 법 집행상의 필요를 조건으로, 자신이 선택한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
- 다.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라.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가지는 것

제 15.8 조 국경간 정보 흐름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제 15.9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전달매체라 함은 현재 알려진 또는 향후 개발되는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물리적 물체로서 그로부터 디지털제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광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디지털제품이라 함은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⁴⁾

전자인증이라 함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4)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라 함은 전자기적 또는 광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디지털제품의 이송을 말한다. 그리고

무역행정문서라 함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